

인문지
편

국내동향 해외동향



서울행정법원, 공공기관 CCTV 공개 알 권리위해 허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CCTV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시위를 하던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8월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와 시위 용품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국가보훈처 정문 CCTV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통행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며, 영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녹화 영상 가운데 일반 통행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의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이들의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지우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기술적으로 CCTV의 모자이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에 대해 “CCTV 제작 회사의 장치를 활용하면 편집이 용이하다”며 국가보훈처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A씨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역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었다.

대법원, '취재 불응시 불리한 보도하겠다' 했어도 협박으로 볼 수 없어

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보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라도 협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7월 17일,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취재부장 A씨에 대해서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 의 하나로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 신문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한다면 취재한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밝혔다.

A씨는 할머니로부터 고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할머니를 방치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했

으나 거부당하자, 취재원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에서는 기자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므로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증거와 관련된 것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재방식은 용인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태블릿PC를 통해 다양한 잡지를 매개하는 '탭진' 서비스 개시

다양한 잡지를 아이패드, 갤럭시탭과 같은 태블릿PC로 구독할 수 있는 '탭진(Tapzin)'이라는 이름의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서비스가 8월 15일 론칭되었다.

탭진은 국내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잡지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 태블릿PC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잡지와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나, 기존 잡지의 인쇄매체로서의 한계를 극복,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동영상 제공과 같은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졌다. 가령, 기사 내용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볼거리와 생동감을 줄 수 있다. 탭진의 제작사인 넥스트페이지 M&C 박동수 대표는 '잡지사들이 멀티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탭진을 이용해 종이 잡지보다 훨씬 더 생생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는 관심 있는 내용을 즐겨찾기로 등록하여 수시로 볼 수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경제미디어그룹, 조선일보매거진 등 4개 회사가 만드는 한경비즈니스, 잡앤조이 등 11종의 잡지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되는 잡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한편, 향후 그 영향력이 증대되면 탭진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조정중재신청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가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탭진 역시 잡지 기사를 매개함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판결

상대방을 '대머리' 라고 부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7월 12일, 온라인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머리’ 라는 표현은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지만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는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대머리’ 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 대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빠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 대머리’라는 말을 사용해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대머리’라는 단어를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김구·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김모씨

벌금형 확정

책과 유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김구·유관순 등 독립운동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되어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가 김모씨에 대해 지난 8월 1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관순 열사가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폭력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공청회에 자료로 배포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주최측에 김구 선생에 대한 허

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도 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통하여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000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일본강점기의 독립 열사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책과 유인물을 통해 유관순 열사를 3.1 운동을 폭력적으로 주도한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표현하고, 김구 선생이 일본인 쓰치다를 죽인 것에 대해 “살인마”라고 표현했다.



[일본동향]

수신료 소송에서 NHK 승소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일본 최고 재판소 제3소법정은 2011년 5월 31일 TV 수신료 지불을 거부한 3명의 남성에게 대하여 NHK가 제기한 수신료지급의 소에서 이 남성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6월 7일자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남성 3명은 NHK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료 지불을 거부해왔다. 이들은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민간방송의 시청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도쿄 고등법원은 2010년 6월 29일 「방송법은 민방의 시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합계 193,700엔의 수신료 지불을 명했다.

도쿄고법, '기사가 허위 보도'라 적힌 전단은 명예훼손 언론사에 승소판결

2011년 6월 7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도쿄고등법원은 2011년 5월 30일, 시바(千葉)현 초시(銚子)시장선거에 입후보한 모키가오루(茂木薫-이하 '모키'라 한다)와 모키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요미우리 신문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 모키에게 220만엔을 요미우리 신문에 지급할 것을 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모키의 세금 체납에 관한 기사를 실은 이후, 모키가 「나에게 취재를 하지 않았다」「허위 보도」라고 쓴 전단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9년 5월 8일 조간 시바현판에 「모키씨 세금 수십만 체납 초시 시장 선거 출마예정 『회사경영 부진으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모키가 적어도 세금 수십만엔을 체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키는 그 후 기자회견과 신문에 전단을 끼워 넣어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요미우리에 대해 360만엔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한바 있다.

도쿄고법은 「대신문사로서 신뢰성을 지녀야 할 요미우리가, 일부지역의 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 15일 1심 도쿄지법이 판결한 330만엔의 배상액은 감액됐다.

수갑을 찬 모습의 사진게재는 유족감정 침해 도쿄지법, 산케이신문사와 야후에 배상명령

2011년 6월 21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2011년 6월 15일 도쿄지방법원은 2008년 총격사건으로 미국에서 체포되어 로스앤젤레스시경내에서 자살한 미우라가즈 요시(三浦和義·일본에서는 무죄확정)의 부인이 미우라가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연행되는 사진 등이 뉴스사이트에 게재되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면서 야후(yahoo)



와 사진과 기사를 배신한 산케이(産經)신문사를 상대로 66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족감정을 인정, 사진을 공표한 양사에 대해 공동으로 6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산케이 신문은 미우라 사망 관련 뉴스를 배신하면서 1985년 9월 미우라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사진을 사용했고, 야후가 이를 뉴스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당시의 수갑을 찬 모습의 사진을 게재할 필요는 없었다」며 유족감정의 침해를 인정하고 「야후는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사진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게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하는 의무를 진다」며 게재 책임을 강조했다.

실명 게재 서적을 비판한 사설

사실에 근거하면 위법 아니다

2011년 6월 21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2011년 6월 7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1999년 4월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발생한 모자살해사건의 피고인(사건 당시 미성년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상소중)의 실명을 게재한 서적에 대한 마이니치신문 사설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마스터미치코의 2,200만엔 손해배상청구 상고를 기각했다.

마스터미치코는 2009년 11월 11일자 조간의 사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출판하려고 한 행위는

기습적이다, 「이익 우선이라는 비판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는 등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6월의 1심 도쿄지법의 판결은 「사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논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12월의 2심 도쿄고법도 「사실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에 오류가 없으며 의견이나 논평의 영역을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이니치신문의 위법성을 부정했다.

[영국동향]

영국 왕세자비의 가족, 사생활침해로 PCC에 불만 접수

영국 왕위계승 서열 2위 윌리엄 왕자와 결혼한 케이트 미들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과 사돈을 맺은 미들턴의 가족들까지도 덩달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신부 들러리를 서면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케이트 미들턴의 여동생, 케이트 피파의 경우 언니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지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연일 이들의 일상사를 지면에 쏟아내면서, 미들턴 집안은 파파라치들의 집요한 사생활 추적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요신문인 뉴스오브더월드(NoW)를 포함해 미러, 일간 데일리 등 4개의 신문이 최근호에 케이트와 피파의 비키니 사진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사진들은 2006년 미들턴 가족이 윌리엄 왕자와 함께 스페인의 이비자 섬으로 휴가를 떠났을 때의 사진들이다. 사진들 속 인물들은 요트 위에서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다.

몇 장의 사진들은 당시에도 보도된 것이었지만, 케이트와 피파의 유명세가 다시금 치솟자 신문들은 다시 그 사진들을 실었다. 특히, 해킹사건으로 영국 언론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오브더월드는 피파가 비키니의 상의를 벗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언론사들의 도를 넘은 취재 열기에 그동안 언론 보도에

침묵하다시피 해온 미들턴 가족은 사생활침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5월 초 영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PCC)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PCC의 대변인은 “4개의 신문에 실린 사진들에 관련된 불만이 미들턴의 가족으로부터 접수돼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탄 파파라치가 케이트의 어머니와 피파를 계속해서 뒤쫓자 미들턴 가족은 언론사에 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PCC는 해당 언론사에 권고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영국의 언론윤리강령은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나,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왕실가의 일원 등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더욱 이번 미들턴 가족의 사건에 대한 영국 PCC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PCC 구실못한다 여론 확산

“법적 규제기관 만들자” 목소리 커져

뉴스오브더월드의 전화 도청 사건을 계기로 영국 언론의 자율 규제기관인 PCC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8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뉴스오브더월드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으로 점화된 PCC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 조사와 별도로, 언론사의 윤리와 문화를 평가할 별도의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국정 조사는 경찰이 해킹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도 신문사측의 로비를 받아 소극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언론, 특히 타블로이드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1년 자율규제기관인 PCC가 설립됐다. 하지만 PCC는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PCC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번 도청 사건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인터내셔널이 PCC에 불법행위의 범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PCC 업무의 취약점을 토로했다. 신문사 측이 위원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현 PCC 정책으로는 언론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론계 안팎에서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법적 규제기관을 만들어 미디어 행태를 견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신문사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언론의 독립을 중시하는 풍토가 강한 영국에서 언론 규제법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가 PCC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만큼, 영국 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영국 정부,

폭동 막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차단 검토

최악의 폭동 사태를 맞은 영국 정부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막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8월 11일, 임시로 소집된 의회에 참석해 “RIM사의 블랙베리 메신저 서비스가 폭동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라며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영국 정부는 폭동이 SNS를 통해 급격히 번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진압하기 힘들어져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캐머런 총리는 경찰의 대응이 폭동 초기에는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거리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주말에도 런던 시내에 모두 1만 6,000명 수준의 경찰관을 배치하겠다”며 폭동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들과 자유 연설가 등은 즉각 반발했다.

오픈라이트그룹의 전무인 짐 킬록(Jim Killock)은 “사람들의 소통을 차단한다면, 그들은 자유를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M 영국지사 대변인과 트위터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이나 즉각 답변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

다”며 “폭력 위협이 있는 내용들은 모두 삭제됐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6~9일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중북부 지방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지금까지 런던 922명, 웨스트미들랜즈 330명, 맨체스터 140명 등 모두 1,5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런던 경찰청은 922명 가운데 401명을 폭력, 약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영국 내무 장관,

청소년 폭동의 익명성은 보호하지 않겠다

지난 8월 18일 영국의 영국 왕립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폭동에 참여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청소년 범죄 보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내무 장관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y)가 “청소년 폭동의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게 익명성을 배제하라는 언급을 한 다음 마련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행동강령 1933. 49조는 청소년 법정에서는 당연히 익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 39조 역시 지역법정이나 왕립법정에서도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한 행동강령 49조와 비슷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공적 관심이

충분히 있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 검찰청은 공적 관심이 익명성 제한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면 검사가 폭동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였다.

영국 왕립 검찰청은 “심각한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범죄자들을 처단하여 시민들을 만족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강경책은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에서는 범죄를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청소년 폭도들은 공동체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로 인해 공포심이 조장되고, 주민들 스스로 본인의 거주지가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 왕립 검찰청은 익명성 제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판사는 반드시 공공의 관심과 청소년의 범죄 과정에 대한 보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던 익명성의 혜택이 법정에서는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대중의 관심이 쏠려있는 범죄에서는 합법적인 공공의 관심에 법원이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반응의 결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범죄예방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5명 중 1명은 18세이하 청소년이다. 하지만 8월 둘째주 런던 법정에서 섰던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청소년이었다.



[미국동향]

미국법원,

신문방송 겸영 법안 무효판결

지난 7월 7일 미국 필라델피아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방송과 신문을 겸영하는 법안이 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법안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FCC 위원장 케빈 마틴(Kevin Martin)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CBS,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클리어 채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게넷 등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07년 부시정권 임기 말에 얻어진 결과물이다.

미국은 1975년부터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대형 신문사들은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 주요 20개 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는데, 특히 '미디어 액세스 프로젝트(Media Access Project)'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이 법이 언론의 집중을 가속화시켜 언론시장의 독점화를 가져오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었다.

재판부가 이 법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주요이유

는 FCC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6번의 공청회를 가지긴 했지만 그 횟수가 너무 적었고,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파급력을 생각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이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FCC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며 이 법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지난 1975년에 제정된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금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해외 통신원 보고]

최지선 통신원,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벨기에 법원, 구글에 사생활 침해로 벌금형

벨기에 법원은 최근 구글(Google)사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000유로의 벌금형을 내렸다.

연방 검찰은 개인 사생활 보호 위원회의 경고와 특수 경찰들의 수사를 통해 구글이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위해 작업 중이던 구글 차량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방문한 사이트 주소, 디렉토리, 이메일의 일부분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구글 차량들이 도로와 주변 사진을 찍기 위해 지나가면서 무선 인터넷(Wi-Fi) 장치까지 스캔하고 보안 장치가 없는 무선 인터넷의 경우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을 수집하였던 부분이다.

이러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벨기에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제시 하였으며, 구글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며 수집된 정보들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지난 3월 국립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사생활 침해로 100,000유로의 벌금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구글은 깊이 사과한 바 있다. 이 밖에

도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구글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라가데흐 그룹 CEO, 명예훼손으로 '라 트리뷴'에 대해 소송 제기

프랑스 미디어 그룹인 라가데흐(Groupe Lagardère)의 CEO 아르노 라가데흐(Arnaud Lagardère)가 프랑스 경제 일간지인 '라 트리뷴(La Tribun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7월 25일자 '아르노는 여전히 라가데흐 그룹을 운영하는가'라는 제목의 '라 트리뷴' 기사가 라가데흐 그룹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신을 중상모략 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다.

'라 트리뷴'의 기사는 아르노 라가데흐 회장이 새로운 여자친구에 빠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있으며, 50살인 아르노 회장이 20세 여자친구와 처음 만난 과정 등을 인터뷰하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 등에 대해 비판하며 아르노 라가데흐 회장이 그룹의 총수로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문은 아르노 회장이 아버지 장-뤽 라가데흐(Jean-Luc Lagardère)의 후계로 그룹 총수 자리를 차지한 점을 들며 아르노 회장의 그룹 경영 의지와 능력에 대해 그룹 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프랑스 CSA, 슈드 라디오의 유대인 관련 발언에 경고

프랑스 시청각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지난 8월 22일 벌어진 슈드 라디오(Sud Radio)의 유대인 관련 발언에 대해 시청각 방송 내용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사건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8월 22일 슈드 라디오(Sud Radio)의 새로운 아침 프로그램인 '자유로운 메나르(Ménard en liberté)'에서 한 청취자는 뉴욕에서 성추문 스캔들로 법정에 선 전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칸이 유대인들의 로비로 인해 뉴욕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호베르 메나르(Robert Ménard)는 청취자의 말을 가로 막으며,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하였으나, 오후 4시~6시까지 진행되는 '리베르테 드 페롤(Liberté de parole)-말할 자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인 에릭 마제(Eric Mazet)와 미셸 카르도즈(michel Cardoze)가 이 문제로 다시 설전을 벌이면서 불붙기 시작하였다. 에릭 마제는 "스트로스-칸이 존경할만한 사람인가"라는 주제에서 "스트로스-칸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오전 방송의 청취자의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

에릭 마제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기자인 미셸 카르도즈는 이러한 방송 진행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방송 중에 그의 한숨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러한 이야기는 끔찍하고, 참기 어렵다. 반유대주의의 전형이다. 이런 헛소리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마제는 "청취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의견에 대해 환영하며, 우리 진실을 말하자!"며 계속 진행하기를 고집하였다. 이에 "멀미가 나기 시작한다."는 미셸 카르도즈에 대해 에릭 마제는 "그 말은 아무것도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덮어두어야 한다는 뜻이나?, 유대인들의 로비가 존재하지 않나?"며 반문했다. 이러한 설전에 대해 방송국으로 100명 이상의 청취자가 전화를 걸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8월 22일 처음 유대인들의 스트로스-칸 지지설을 제기했던 청취자는 25일 '자유로운 메나르(Ménard en liberté)'에 다시 출연하여 22일 오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유치하게 유대인들과 관련한 주제로 다룬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의 친구와 프랑스 유대인 연합(La Confédération des Juifs de France et amis d'Israël)'은 이 방송 내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SOS 인종주의(SOS Racisme)'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참기 힘들며, 낙인을 찍는 이야기와 가장 나쁜 반유대인주의의 전형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비난

하였다.

슈드 라디오(Sude Radio)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며, “에릭 마제가 프로그램 내내 스트로스-칸을 방어하며 실수를 한 것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책임자가 스튜디오에 배석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사건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청각고등위원회의 시청각 방송 콘텐츠 윤리 팀장인 하쉬드 아랍(Rachid Arhab)은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차별적인 언사’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꼼꼼히 조사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청각고등위원회는 9월 7일 슈드 라디오(Sud Radio) 이사진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문제 재발 방지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청각고등위원회가 특히 문제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의견을 말하도록 질문을 하고, 청취자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취자들이 그러한 의견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이 사건은 프랑스 방송에서 항상 문제시 되기 쉬워 모두들 조심하는 부분 중 하나인 인종주의 문제가 정치 현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스트로스-칸 문제와 얽혀 불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청각고등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